

남북협력기금

재무제표에 대한

## 감 사 보 고 서

제22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21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 목 차

---

	<u>페이지</u>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2
재 무 제 표	
· 재 정 상 태 표 .....	3
· 재 정 운 영 표 .....	4
· 순자산변동표 .....	5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6~17

## 외 부 감사 인 의 감 사 보 고 서

남북협력기금  
기금수탁관리자 귀하

본 감사인은 첨부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의 2012년 12월 31일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에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 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 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기금수탁관리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기금의 2012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정운영결과 및 순자산의 변동을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음은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의 바 및 5의 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금은 북한조선무역은행의 대여금 996,700백만원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여금 1,374,393백만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8조 및 제 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31일 현재 상기 북한조선무역은행 대여금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 등은 관련 차주의 특성상 향후 상황변화 등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 중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 현재 대북경수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이에 따른 향후 사업재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동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는 특히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삼 일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安昊台



2013년 2월 1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13년 2월 1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기금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재 정 상 태 표

제 22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21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단위: 원)

과 목	제 22(당) 기		제 21(전) 기	
<b>자 산</b>				
<b>I. 유동자산</b>		1,045,694,084,499		1,039,949,698,118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3)		400,290,608,200		74,048,080,990
1) 현금및현금등가물	400,290,608,200		74,048,080,990	
2. 단기금융상품(주석 3)		148,100,000,000		427,700,000,000
1) 정기예금	121,100,000,000		385,100,000,000	
2) 기타의단기금융상품	27,000,000,000		42,600,000,000	
3. 단기투자증권(주석 4)		406,998,084,400		455,645,933,397
1) 지분증권	406,998,084,400		453,645,933,397	
2) 채무증권	-		2,000,000,000	
4. 미수채권(주석 6)		4,955,095,113		9,990,695,548
1) 미수이자수익	4,955,095,113		9,990,695,548	
5. 단기대여금(주석 5,6)	92,159,390,490		75,489,033,140	
1) 정부의단기대여금	92,159,390,490		75,489,033,140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6,809,093,704)	85,350,296,786	(2,924,044,957)	72,564,988,183
1) 단기용자금대손충당금	(2,227,154,254)		(2,036,234,021)	
2) 단기용자보조원가충당금	(4,581,939,450)		(887,810,936)	
<b>II. 부자산</b>		2,567,994,193,365		2,659,858,822,711
1. 장기대여금(주석 5,6)	2,576,247,943,370		2,665,452,145,998	
1) 정부의장기대여금	2,576,247,943,370		2,665,452,145,998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8,253,750,005)	2,567,994,193,365	(5,593,323,287)	2,659,858,822,711
1) 장기용자금대손충당금	(5,992,461,287)		(5,593,323,287)	
2) 장기용자보조원가충당금	(2,261,288,718)		-	
<b>III. 일반유형자산</b>		14,797,211,390		-
1.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주석 7)		14,797,211,390		-
1) 건설중인토지	5,839,098,720		-	
2) 건설중인건물	8,958,112,670		-	
<b>VI. 기타비유동자산</b>		68,398,744,455		69,698,777,222
1. 장기미수채권(주석 5,6)		68,398,744,455		69,698,777,222
1) 장기미수이자수익	68,398,744,455		69,698,777,222	
<b>자 산 총 계</b>		<b>3,696,884,233,709</b>		<b>3,769,507,298,051</b>
<b>부 채</b>				
<b>I. 유동부채</b>		550,306,594,299		23,740,379,067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주석 8)		530,000,000,000		-
1) 유동성장정부내장기차입금	530,000,000,000		-	
2. 기타유동부채		20,306,594,299		23,740,379,067
1) 미지급비용	20,306,594,299		23,724,543,451	
2) 선수수익	-		15,835,616	
<b>II. 장기차입부채</b>		1,832,491,000,000		2,362,491,000,000
1. 장기차입금(주석 8)		1,832,491,000,000		2,362,491,000,000
1) 정부내장기차입금	1,832,491,000,000		2,362,491,000,000	
<b>부 채 총 계</b>		<b>2,382,797,594,299</b>		<b>2,386,231,379,067</b>
<b>순 자 산</b>				
<b>I. 기본순자산</b>		-		-
<b>II. 적립금 및 잉여금</b>		1,295,388,555,010		1,366,929,985,587
<b>III. 순자산조정(주석 10)</b>		18,698,084,400		16,345,933,397
<b>순 자 산 계</b>		<b>1,314,086,639,410</b>		<b>1,383,275,918,984</b>
<b>부 채 와 순 자 산 계</b>		<b>3,696,884,233,709</b>		<b>3,769,507,298,051</b>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재 정 운 영 표

제 22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 21 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남북협력기금

(단위: 원)

과 목	제 22(당) 기			제 21(전) 기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주석 9)	42,514,553,126	(9,829,890,461)	32,684,662,665	34,489,362,671	(9,437,346,804)	25,052,015,867
1.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	2,429,669,618	(38,547,490)	2,391,122,128	2,782,660,925	(3,652,320)	2,779,008,605
2. 인도적분계해결 프로그램	2,949,052,001	(4,708,400)	2,944,343,601	10,887,113,781	(288,827,270)	10,598,286,511
3.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24,605,242,615	(7,701,751,675)	16,903,490,940	13,653,491,113	(7,642,763,944)	6,010,727,169
4. 개성공단지원 프로그램	12,530,588,892	(2,084,882,896)	10,445,705,996	7,166,096,852	(1,502,103,270)	5,663,993,582
II. 관리운영비			71,617,940			83,539,600
1. 경비			71,617,940			83,539,600
(1) 외주용역비			71,617,940			83,539,600
III. 비배분비용			193,548,187,356			113,500,173,458
1. 이자비용			112,669,984,738			113,500,173,458
2. 평가손실			80,878,202,618			-
IV. 비배분수익			41,960,866,074			56,299,190,245
1. 이자수익			31,671,485,774			34,025,391,195
2. 평가이익			-			14,052,858,400
3. 자산처분이익			10,289,380,300			8,220,940,650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184,343,601,887			82,336,538,680
VI. 비교환수익 등			2,171,310			1,567,430
1. 기타재원조달및이전			2,171,310			1,567,430
VII. 재정운영결과(V-VI)			184,341,430,577			82,334,971,250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순자산변동표

제 22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 21 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남북협력기금

(단위:원)

과 목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 계
I. 기초순자산(전기초)	-	1,449,264,956,837	20,094,243,958	1,469,359,200,795
1. 보고금액	-	1,449,264,956,837	20,094,243,958	1,469,359,200,795
II. 재정운영결과	-	82,334,971,250	-	82,334,971,250
III. 조정항목	-	-	(3,748,310,561)	(3,748,310,561)
1. 투자증권평가손실(주식 4)	-	-	(3,748,310,561)	(3,748,310,561)
IV. 기말순자산(전기말)(I - II + III)	-	1,366,929,985,587	16,345,933,397	1,383,275,918,984
I. 기초순자산(당기초)	-	1,366,929,985,587	16,345,933,397	1,383,275,918,984
1. 보고금액	-	1,366,929,985,587	16,345,933,397	1,383,275,918,984
II. 재정운영결과	-	184,341,430,577	-	184,341,430,577
III. 조정항목	-	112,800,000,000	2,352,151,003	115,152,151,003
1. 투자증권평가이익(주식 4)	-	-	2,352,151,003	2,352,151,003
2. 기타순자산의증감	-	112,800,000,000	-	112,800,000,000
IV. 기말순자산(당기말)(I - II + III)	-	1,295,388,555,010	18,698,084,400	1,314,086,639,410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2 기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21 기 : 2011년 12월 31일 현재

## 남북협력기금

### 1. 기금의 개요

남북협력기금(이하“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제정공포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대한민국정부가 25,000백만원을 출연함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남북협력기금법 제 7조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 5조 제 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중요한 회계정책

기금의 재무제표는 2009 회계연도부터 적용된 국가회계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금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수익의 인식

기금의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으며,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및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수익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나. 현금및현금성자산

기금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다. 장·단기금융상품

기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에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 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라. 유가증권

기금은 유가증권에 대해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을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기투자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거나 1년 이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거나 1년 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장·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증권과 기타장·단기투자증권은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마. 채권 등의 평가

기금은 대여금 등의 잔액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대여금 등의 잔액에 대하여 차주, 보증인, 유가증권 발행인, 보증의뢰인 등 관련 거래처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감안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였습니다. 기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분류된 대여금에 대해서 각각 0.85% 이상(일부 업종은 0.9% 이상), 7% 이상, 20% 이상, 50% 이상 및 100% 상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바. 용자보조원가충당금

기금은 대여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되는 용자금의 경우 용자 회계준칙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용자금의 원금에서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대여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매년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용자금의 평가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 금액은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조선무역은행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용자금 등에 대해서 차주의 특수성으로 인해 미래현금흐름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8조 및 제 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사. 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의 상대방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에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자산의 차감으로 표시하며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아. 자산의 감액 등

기금의 재정상태표 자산 중 국가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며 감액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장부가액까지 한도로 하여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자. 우발상황

기금은 지출의 시기 및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의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과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차. 외화자산의 환산

기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한 미달러화 기준 환율(당기말 ₩1,071.1/USD) 및 재정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산손익을 재정운영 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카. 출연금

기금이 수령하는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금은 기금설치 목적을 위해 지출되는 재원의 용도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하며,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또는 순자산변동표 조정항목의 기타순자산의 증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재원의 용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주된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운영비 등에 총당하여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처리하며, 주로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자산 매입, 대여 등)로 사용되어 조성된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에 기타순자산의 증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타. 위탁수수료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 7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5조 제 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운용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통일부와 협의된 위탁수수료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고 프로그램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3.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2012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연이자율(%)	금 액		금융기관
	2012. 12.31	2012	2011	
<u>현금및현금등가물</u>				
MMDA	2.8	1,768	1,865	국민은행
MMT	3.45 - 3.9	260,319	5,000	우리투자증권 외
MMF	실적배당	723	2,183	삼성자산운용
MMW	3.65 - 3.85	137,481	-	삼성증권 외
정기예금	-	-	56,000	우리은행 외
표지어음	-	-	9,000	기업은행
		400,291	74,048	
<u>단기금융상품</u>				
정기예금	3.43 - 4.5	121,100	385,100	외환은행
MMT	-	-	10,000	우리투자증권
MMW	4.13	2,000	-	삼성증권 외
표지어음	3.8 - 3.95	25,000	32,600	기업은행
		148,100	427,700	
		548,391	501,748	

### 4. 단기투자증권

2012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단기투자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1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단기투자증권						
지분증권(*)	388,300	406,998	406,998	437,300	453,646	453,646
채무증권	-	-	-	2,000	2,000	2,000
	388,300	406,998	406,998	439,300	455,646	455,646

(\*)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의 경우 모두 시장성이 있는 지분증권이며, 관련하여 발생한 투자증권평가이익(손실) 2,352백만원(전기: (3,748)백만원)을 장부가액에 반영하였습니다.

5. 대여금

가. 기금은 남북한의 상호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자대상은 남북간 경제교류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 및 남북 당국간 합의된 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북한당국 등입니다.

나. 2012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 용자사업의 규모 및 이자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연이자율(%)	금 액	
	2012.12.31	2012	2011
용자금(*)	0.0 - 5.9	2,668,407	2,740,941
용자보조원가충당금		(6,843)	(888)
대손충당금		(8,220)	(7,629)
		2,653,344	2,732,424

(\*) 상기 용자금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용자사업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다. 2012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정부외장·단기대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연이자율(%)	금 액	
		2012.12.31	2012	2011
정부외 단기대여금	실적한도대출	1.2 - 3.8	6,948	7,124
	반출자금대출	3.0 - 4.9	460	460
	특별경제협력자금대출	2.0 - 3.0	54,824	37,372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9 - 3.0	26,629	23,066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3,298	2,372
	외화표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	5,095
			92,159	75,489
정부외 장기대여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9 - 5.9	149,297	167,183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55,858	55,780
	경수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	1,374,393	1,374,393
	외화표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996,700	1,068,096
			2,576,248	2,665,452
			2,668,407	2,740,941

라. 2012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정부외장·단기대여금의 대출종류별 정부승인금액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USD, 백만원).

대출종류	차주별	정부승인금액	집행금액(**)	회수금액	대출잔액
대북식량차관(2000)(*)	북한조선무역은행	USD 100,000	USD 88,355	USD -	USD 88,355
대북식량차관(2002)(*)	북한조선무역은행	110,000	106,000	-	106,000
대북식량차관(2003)(*)	북한조선무역은행	110,000	106,000	-	106,000
대북식량차관(2004)(*)	북한조선무역은행	124,000	117,986	-	117,986
대북식량차관(2005)(*)	북한조선무역은행	155,000	150,000	-	150,000
대북식량차관(2007)(*)	북한조선무역은행	154,000	151,701	-	151,701
대북자재장비차관(2002)(*)	북한조선무역은행	45,000	42,887	-	42,887
대북자재장비차관(2003)(*)	북한조선무역은행	60,000	68,051	-	68,051
대북자재장비차관(2005)(*)	북한조선무역은행	28,500	21,959	-	21,959
대북경공업원자재차관(2007)(*)	북한조선무역은행	80,000	80,000	2,400	77,600
		USD 966,500	USD 932,939	USD 2,400	USD 930,539
대북경수로사업 대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3,542,000	1,374,393	-	1,374,39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4)(*)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26,100	22,920	6,876	16,044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900	801	160	64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10,400	9,255	-	9,25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8)(*)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15,900	13,556	-	13,556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9)(*)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8,910	7,290	-	7,290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0)(*)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3,768	3,505	-	3,50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5,999	5,527	-	5,52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2)(*)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3,338	3,338	-	3,338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한국관광공사 외	320,412	280,703	42,545	238,158
		3,937,727	1,721,288	49,581	1,671,707

(\*) 집행 완료

(\*\*) 2012년 12월 31일 현재 대북식량차관, 대북자재장비차관 및 대북경공업원자재차관의 원화환산액은 996,700백만원입니다(주석 6참조).

마. 2012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정부외장·단기대여금에 대한 용자보조원가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정부외 장·단기대여금	용자보조원가 충당금	대손충당금
대북식량및자재장비등 차관(*)	996,700	-	-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1,374,393	-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	59,156	2,641	-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238,158	4,202	8,220
	<b>2,668,407</b>	<b>6,843</b>	<b>8,220</b>

  

구 분	2011		
	정부외 장·단기대여금	용자보조원가 충당금	대손충당금
대북식량및자재장비등 차관(*)	1,073,191	-	-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1,374,393	-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	58,152	-	-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235,205	888	7,629
	<b>2,740,941</b>	<b>888</b>	<b>7,629</b>

(\*) 기금은 상기 대여금 2,371,093백만원(전기: 2,447,584백만원)에 대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8조 및 제 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주석 2의 바 참조). 그러나 2012년 12월 31일 현재 북한조선무역은행의 대여금(대북식량차관, 대북자재장비차관 및 대북경공업원자재차관) 996,700백만원과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대여금(대북 경수로사업 본 공사비) 1,374,393백만원 등은 관련 차주의 특성상 향후 상황변화 등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 중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 현재 대북 경수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이에 따른 향후 사업재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동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는 특히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바. 기금이 당기 중 용자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운영표에 용자보조비용 및 대손상각비로 인식한 금액은 각각 6,671백만원 및 590백만원(전기: 691백만원 및 1,505백만원)입니다.

6. 외화자산

2012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외화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USD, 백만원).

계정과목	외화종류	2012.12.31		2011.12.31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미수채권	USD	-	-	996	1,149
단기대여금(대북차관)	USD	-	-	4,418	5,095
장기미수채권	USD	53,381	57,176	52,385	60,415
장기대여금(대북차관)	USD	930,539	996,700	926,121	1,068,096
		<u>983,920</u>	<u>1,053,876</u>	<u>983,920</u>	<u>1,134,755</u>

7. 일반유형자산

가. 당기 중 기금의 일반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2012.1.1	취득	2012.12.31
건설중인 토지	-	5,839	5,839
건설중인 건물	-	8,958	8,958
	-	<u>14,797</u>	<u>14,797</u>

나. 기금은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당기 중 14,797백만원을 건설중인 자산에 지출하였습니다.

8. 차입금

가. 2012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차입처	연이자율(%)	금 액	
		2012.12.31	2012	201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감: 1년이내상환일도래분)	한국은행	3.75 - 5.89	2,362,491	2,362,491
			(530,000)	-
			<u>1,832,491</u>	<u>2,362,491</u>



나. 2012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장기차입부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상환연도	정부내장기차입금
2013년	530,000
2014년	291,591
2015년	90,500
2016년	207,000
2017년	765,000
2018년 이후	478,400
	<u>2,362,491</u>

9. 프로그램순원가

가.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재정운영표에 계상되어 있는 프로그램총원가를 발생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분	2012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문화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지원	합계
업무대행수수료	89	108	1,738	706	2,641
기타용역비	3	17	107	11	138
기타민간보조비	2,338	2,824	18,486	8,827	32,475
대손상각비	-	-	590	-	590
용자보조비용	-	-	3,684	2,987	6,671
	<u>2,430</u>	<u>2,949</u>	<u>24,605</u>	<u>12,531</u>	<u>42,515</u>

구분	2011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문화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지원	합계
업무대행수수료	156	614	1067	714	2,551
기타용역비	10	4	24	-	38
기타민간보조비	2,617	10,269	5,989	6,452	25,327
보험비용	-	-	4,377	-	4,377
대손상각비	-	-	1,505	-	1,505
용자보조비용	-	-	691	-	691
	<u>2,783</u>	<u>10,887</u>	<u>13,653</u>	<u>7,166</u>	<u>34,489</u>

나.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재정운영표에 계상되어 있는 프로그램총수익을 발생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문화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지원	합 계
정부외용자금이자수익	-	-	5,819	949	6,768
보험수익	-	-	1,678	-	1,678
잡이익	39	5	205	1,135	1,384
	39	5	7,702	2,084	9,830

구 분	2011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문화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지원	합 계
정부외용자금이자수익	-	-	5,878	576	6,454
보험수익	-	-	1,698	-	1,698
잡이익	4	289	66	926	1,285
	4	289	7,642	1,502	9,437

#### 10. 순자산조정

당기 및 전기 중 기금의 순자산조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1			
	당기초	증가	감소	당기말	전기초	증가	감소	전기말
투자증권평가손익								
단기투자증권								
지분증권	16,346	11,155	8,803	18,698	20,094	7,369	11,117	16,346

#### 11.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가.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계약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종 류	회 사 명	계약확정금액	계약미확정금액
경제협력사업보험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144개 업체	359,647	148,987

나.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은 대북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보험계약과는 달리 정치적 위험인 비상위험이 크게 내재되어 있으며, 과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당 보험계약은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조 및 보험회계준칙에 의거한 보험충당부채는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당기 및 전기 중 기금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1	
	보험수익	보험비용	보험수익	보험비용
경제협력사업보험	1,678	-	1,698	4,377

라. 2012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서울고법	(주)겨레사랑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 보험금청구	582	1심패소, 2심 진행중

2012년 12월 31일 현재 상기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며, 기금수탁관리자는 상기 소송의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